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업무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8조의6, 제8조의7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단, 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카지노사업자”는 제외)에 적용된다.

제 2장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 제4조(보고 대상)** ①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영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란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의 상대방 사이에 물리적인 현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③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물리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는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상대방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현금으로 처리한 거래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 제외대상) ①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의2 제1항 각 호 및 영 제8

조의4, 제8조의5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금융회사등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②제1항 제1호에서의 다른 금융회사등에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③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영 제8조의5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6조(보고기준금액 산정방법) ①금융회사등이 제4조 제1항의 보고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합산한다.

②제1항에서의 “금융거래”는 금융회사등의 창구를 통한 거래 외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제1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각 실명증표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합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준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영 제8조의2 제4항 및 감독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금액
3.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
4.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5.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6.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제7조(보고의무 금융회사등) ①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

고의무를 가지는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4조 제1항의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금융회사등으로 정한다.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실명증표를 확인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보고한다.

1. 다른 금융회사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2. 전자금융서비스(CD/ATM 등) 업체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3. 금융회사등간에 지급 또는 영수 위탁계약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을 이용한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③ 다른 금융회사등에 지급제시한 정액 자기앞수표의 현금 지급은 자기앞수표 발행 금융회사등이 보고한다.

제8조(보고 시기)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방법)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감독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9조의2(긴급한 경우의 보고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

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 을 감독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전자기록매 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오보고 취소 절차)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고액 현금거래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이하 ‘오보고’라 한다)를 취소한다.

1. 금융회사등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제13조 제1항의 내부보고체제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해당 오보고를 신속하게 취소한다.
2.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금융회사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해당 오보고를 신속하게 취소한다.

제12조(의심되는 거래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장 내부통제 구축 · 운영

제13조(보고체제 수립) 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제와 이를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의 오류,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 편의(전산 환경 등) 및 전산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거래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되지 않도록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자체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자료보존) 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가지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또는 내부승인 관련 자료
2. 금융거래기록과 관련된 자료
3.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해 작성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4.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외 등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5. 월별 고액현금거래 보고 건수 및 금액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융거래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7조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동년 동월 동일 이후에는 지급 금융회사등이 정액 자기앞수표의 현금 지급과 관련한 고

액현금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